

# 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ACRC

# 국 민 권 의 위 원 회

## 의 결

의안번호 제2024 - 701호

의 안 명 「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」

대상기관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

의 결 일 2024. 12. 23.

### 주 문

「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」을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.

### 이 유

별지와 같다.

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4년 12월 23일

위 원 장 유 철 환

위 원 박 중 민

위 원 이 명 순

위 원 조 소 영

위 원 권 석 원

위 원 최 명 규

위 원 한 삼 석

위 원 송 현 주

위 원 홍 세 욱

위 원 홍 봉 주

위 원 김 태 영

위 원 최 진 영

위 원 신 대 희

위 원 이 홍 주



##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

2024. 12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# **목 차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일반 현황 .....                  | 2  |
| I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              | 5  |
| 1. (준비) 임신·출산 준비단계 지원 부족 .....   | 5  |
| 2. (지원신청)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서류 제출 ..... | 9  |
| 3. (지원) 난임시술비 지원금 수령 불편 .....    | 13 |
| 4. (치료)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여건 부족 .....  | 15 |
| IV. 개선방안 .....                   | 18 |
| 1. 임신·출산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.....      | 18 |
| 2. 난임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의 부담 해소 .....  | 19 |
| 3. 난임시술 지원금 대상자 편의성 제고 .....     | 19 |
| 4.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확대 .....          | 20 |
| V. 조치사항 .....                    | 21 |
| [붙임1]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.....        | 22 |
| [붙임2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식 .....    | 25 |



## I. 추진개요

- ◆ (국정과제) 15.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-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
- ◆ (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) 안전한 시술과 정보제공·상담, 난임치료 휴가 확대
- ◆ (관련법령) 「모자보건법」, 「보조생식술 급여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」 등

### □ 추진배경

- 정부는 합계출산율 0.72명('23년)이라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의지가 있는 **난임부부\***(전체부부의 15%)를 적극 지원중

\*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을 하지 못한 부부

-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적용, 난임시술비 지원사업(지자체)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, 임신 준비와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

- 가임력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 유인이 낮고,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·정자 동결이 불가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에 불필요한 소득증명서류를 요구하고, 시술할 때마다 신청 절차가 반복되며, 지원결정 전 치료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
- 부부가 함께 난임시술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치료 환경 조성 필요

- 미혼이든, 동거 중이든 가임력검사를 해볼 수 있어야 함('24. 11월, 언론보도)
- 난임지원을 받기까지 시기와 서류를 따져 환자들의 심적 고통을 가중 시킴 ('24. 4월, 국민신문고)
- 당일에 직장사정으로 난임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지원받지 못함. 난임지원비 소급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('24. 2월, 국민신문고)

- 이에 따라, 난임 예방 및 시술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난임시술로 인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

## II. 일반 현황

### □ 난임지원 관련 법률

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 (난임 극복 지원사업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□ 난임시술 지원체계

#### ○ (국가)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

- 지원금액: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%를 적용
- 지원횟수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 지원(출산당)
- 지원범위
  - 체외수정(신선배아): 정자채취 및 처리부터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
  - 체외수정(동결배아): 해동부터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
  - 인공수정: 정자채취 및 처리, 자궁강내 정자주입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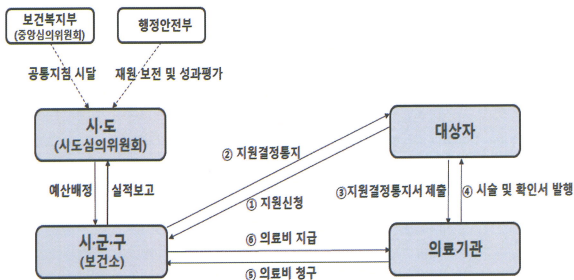
#### ○ (지방자치단체)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 운영

- 지원범위: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  - ※ (지원시술) 과배란 유도, 난자 채취, 정자 직접 주입술 등
- 지원횟수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 지원(출산당)



| 시설   |      | 국민건강보험        |       | 지자체 지원 (기본형)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| 건강보험<br>지원 횟수 | 본인부담률 |              |
| 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20회           | 30%   | 110만원        |
|      | 동결배아 |               |       | 50만원         |
| 인공수정 |      | 5회            |       | 30만원         |

- 지원절차: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‘지원결정통지서’를 받아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한 이후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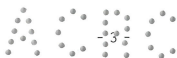
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

## □ 난임시술 종류

- 체외수정: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이식

| 시술시작 | 난소자극               | 난자채취         | 체외수정 | 배아이식 | 임신헌인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⇒ 과배란주사,<br>10~14일 | ⇒ 초음파,<br>마취 | ⇒    | ⇒    | ⇒ 2주<br>대기기간 |

- 인공수정: 여성의 배란기에 맞추어 자궁강내에 시술



## □ 난임시술 진료현황

- 불임·난임(이하 '난임'이라고 함)시술 진료자 수는 '18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, 남성 환자수가 여성 환자수보다 약 8만명 더 적음

< 성별 난임시술 진료현황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) >

(단위: 명)

|    | 구분 | 2018년   | 2019년   | 2020년   | 2021년   | 2022년   |
|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남성 | 불임 | 78,376  | 79,299  | 78,909  | 88,757  | 85,516  |
|    | 난임 | 56,116  | 56,455  | 59,659  | 65,735  | 64,143  |
|    | 계  | 134,492 | 135,754 | 138,568 | 154,492 | 149,659 |
| 여성 | 불임 | 149,546 | 145,910 | 147,437 | 159,599 | 153,085 |
|    | 난임 | 64,922  | 66,142  | 69,571  | 77,407  | 76,315  |
|    | 계  | 214,468 | 212,052 | 217,008 | 237,006 | 229,400 |

- '21년 난임시술 진료현황 ('22년 난임시술 의뢰기관 평가결과, 3년 주기)
  - (연령) 난임시술 대상자는 35세~39세가 전체 대상자의 약 36%를 차지하며, 평균연령은 37.6세임
  - (원인) 난소기능저하 18.9%, 남성요인 13.2%, 원인불명 26.1% 등의 원인이 있으며, 남성요인 난임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## □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용 경험 (불임1)

- '24년 10월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
  - ① (인식)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잘 알고 있다(33%), 들어본 적이 있다(56%)로 제도의 인지도가 높음
  - ② (경험) 난임지원제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7%로 나타남

### Ⅲ. 현황 및 문제점

1

#### 준비 임신·출산 준비단계 지원 부족

#### □ 미혼 남녀의 가임력검사(산전검사) 접근성 부족

##### 현황

-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'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'을 시행
  - 난소기능검사, 초음파검사, 정액검사 등 가임력검사 비용을 지원

##### 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('24년)

- (대상)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  - (내용) 여성: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, 남성: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원 지원
  - (신청방법) 주소지 보건소, e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사전에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아 3개월 이내에 **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** 검사
  - (비용지급)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비용 청구
- 임신 희망 남녀가 임신 시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'25년부터 모든 25세 ~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검사 지원 계획(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)

##### 문제점

- 가임력검사 비용 지원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)제도는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에 신청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신혼부부, 미혼 남녀의 참여 유인이 부족
- 보건소의 검사의뢰서를 받아,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, 보건소에 검사비 지급 청구를 해야 검사 지원금 지급

|          |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|        |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|--------|---|--------|
| 신청<br>절차 | 신청 | ⇒ | 검사의뢰서 발급 | ⇒ | 검사         | ⇒ | 검사비 청구 | ⇒ | 검사비 지급 |
|          | 부부 |   | 보건소      |   | 지정<br>의료기관 |   | 부부     |   | 보건소    |



- 특히, 미혼 남녀는 임신·출산을 계획하고,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진단할 필요성이 큼에도 가임력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

#### 【 민원사례 】

- 가임력 검사 지원제도 홍보가 잘 안되고, 먼저 검사의뢰서를 받은 후 검사비를 받을 수 있어 행정편의 위주 시스템이라고 느낌. **맞벌이 부부는 검사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챙겨 받기 어려움** (‘24. 5월, 국민신문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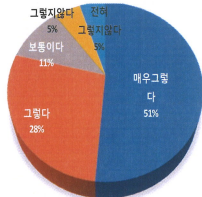
#### 【 언론보도 】 난임 예방 메시지 중요 (‘24. 11월)

- “기혼이든, 미혼이든, 동거 중이든 가임력검사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. 10대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해야, 당장 임신 생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생식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.”

- 국가건강검진시 혈액검사를 하여 난소기능검사(AMH) 등을 한 번에 받게 될 경우, 병원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음
-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난소기능검사, 초음파검사, 정액검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국민 누구든지 가임력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실효적
- ※ ‘난임진단 전 난소기능검사 받은 적 없음’(59.2%), ‘건강보험을 통한 난임검사 비용 지원 방법을 선호함’(46.6%)으로 나타남(‘23년 한국난임가족연합회)

#### <‘24. 10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>

- (검진 의향) 설문에 참여한 10대~40대 남녀 중 가임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다면,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9%에 달해 검진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큼



<10대~40대 남녀 955명>



## □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 없이 자신의 난자·정자 동결 불가

### 현 황

- 「생명윤리법」 제24조(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)에 따라 법적 배우자가 있는 자는 난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가 전제조건

#### 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(「생명윤리법」) 】

제24조(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)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, 정자 기증자,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·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.

1.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
2. 배아·난자·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
3. 배아·난자·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(생략)

#### 【 난자·정자 동결 절차 】

- 법적 배우자 유무에 따라, ① 미혼여성은 '난자'만 동결, ② 기혼여성은 난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정자와 수정한 '배아'(성공확률 높음)도 동결할 수 있음
- (신청방법)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,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정부24를 통한 온라인동의 후 보건소 승인(1-2시간 내외)

### 문제점

- 배우자가 동결에 반대하면, 자신의 난자(또는 정자)임에도 동결할 수 없는 상황
- 투병·연락두절 등 배우자가 동의를 못 하는 사정이 있거나,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, 본인의 난자(정자)를 가임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동결할 수 없음
- ※ 가임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놓친 후 몇 년이 지나, 상황이나 의견 변경으로 비로소 배우자가 동결에 동의하는 경우 신체적 사유(생식기능 저하 등)로 난임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

- 또한, 자신의 생식세포인 난자(또는 정자)의 동결은 개인 결정권의 영역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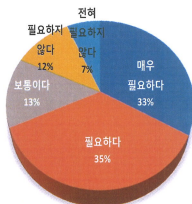
#### 【 민원사례 】

- 미혼여성의 경우 단독 결정으로 난자를 냉동할 수 있으나, 기혼여성의 경우 결정이 제한됨 ('24. 4월, 국민제안)

- 난자를 동결한 자가 배우자와의 임신 계획이 생기면 배아 생성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, 난자 동결 단계부터 미리 배우자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적음

<'24. 10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>

- (동결)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·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8%



< 난자·정자 동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? >

|   | 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응답자  | 비율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1 | 난자·정자 동결은 개인 결정권의 영역임             | 631명 | 40% |
| 2 | 자녀 유무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대립으로 동의 받기 어려움 | 376명 | 24% |
| 3 | 미혼, 사실혼인 자는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이들과의 차별 소지 | 292명 | 19% |
| 4 | 투병, 연락 두절 등 배우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 발생    | 245명 | 16% |

## □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후에도 소득증명서류 요구

## 현 황

## ○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

- '24년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요건 중 소득기준(가구소득 180% 이하)이 폐지되어,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

## 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개요 】

- 근거: 정부-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, 각 지자체 조례

## 소득기준 폐지 이전

- 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판정기준표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
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고지금액 기준)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   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      |
| 2인    | 6,629,000     | 235,283               | 190,636 | 239,074 |
| 3인    | 8,487,000     | 304,986               | 271,091 | 314,423 |
| 4인    | 10,314,000    | 377,299               | 351,294 | 397,093 |
| 5인    | 12,053,000    | 453,848               | 433,430 | 498,289 |



## 소득기준 폐지 이후('24. 1월~)

- '23. 3월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난임부부가 소득 수준과 무관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조건 폐지

(X)

## 문제점

-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, 여전히 지원결정 통지를 위해 소득증명서류인 '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'를 제출



-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상 제출서류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삭제되었으나, '건강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'를 지원 자격 요건으로 규정,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납부확인서 요구

#### 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 】

##### □ 지원신청 자격

- 1)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2)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3)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**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**

##### □ 제출 서류

-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- ② 난임 진단서 1부 (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같음함)
-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
  - ※ ③~④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-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  - 당사자 시술동의서
  - 주민등록등본\*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
  -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)

#### 【 난임시술비(지자체)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】

-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② 난임 진단서 (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같음함)
- ③ **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**
- ④ **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*
- ⑤ 주민등록등본 1부
- ⑥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  - 당사자 시술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사실혼 확인보증서,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



## 【 소득증명서류 요구 예시 】

### 예시1

#### 소득기준

##### ✓ 소득기준 없음

##### ✓ 신청방법: 산모수치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(정부24)신청(바로그)

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
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여 시술이 중

#### 제출서류

##### ✓ 구비서류

##### •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

-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(영문신청서 작성)
- ② 난임진단서
- ③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
경역장사서 유효기간: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감사결과서 인정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
- 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⑥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방법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  
※ ⑤⑥호의 경우 '전자정부법'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 
(단,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)

### 예시2

###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- 지원대상: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
- 지원기준: 신청일 기준 국내 주소자
- 지원내용

| 지원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             | 만44세 이하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체외수정           | 신청여야<br>출생해야 | 1~20회<br>최대 110만원 |
| 인공수정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5회<br>최대 50만원   |

##### ※ 소득기준 제외(2024. 1. 1)

- 구비서류
- 난임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(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 1부

####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

- 신청기간: 연중
- 신청대상: 난임부부(남성 및 여성)/소득기준 및 연한제한 없음  
※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출생년도 내 주민등록거주자
- 지원내용: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
- 구비서류: 신청서, 난임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(필수임) 경우 부부 모두

## 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요구 이유('24.10월 지자체 실태조사) 】

- 난임부부 지원 조건이 여전히 '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'가 조건이기 때문에, 소득증명서류를 확인

## 【 민원사례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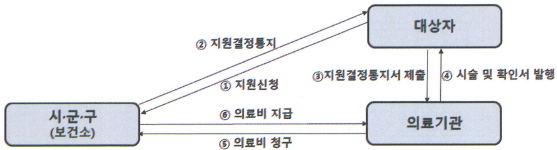
- 난임지원의 소득기준이 모두 폐지되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입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음. 남편이 외향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건보료 납입급여정지되었으나, 국적·재직 증명에도 난임지원금을 받지 못함 ('24. 2월, 국민신문고)

## □ 매 시술마다 난임지원결정통지 신청과정 반복

## 현 황

-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, 지자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술 전 지자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

【 (그림) 난임지원결정통지 등 절차 】



- 난임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위해 시술종류, 동의서, 건강보험자격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(붙임2)
-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며, 통지서 당 1회의 난임 지원 적용

문제점

- 난임시술을 1회 받을 때마다 사전에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여, 난임부부가 신청 절차에 시간·비용을 소모
- 난임지원결정통지에 필요한 내용은 단기간(3개월)에 변동되기 어려운 서류임에도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해, 보건소를 방문하는 난임부부와 통지서를 발급하는 보건소 모두 부담을 느낌

【 민원사례 】

- 최초로 난임지원 신청을 해도 매번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새로 정부24를 통해 번거로운 난임지원 신청과정을 거쳐야 함. **난임지원 결정이 났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왜 거쳐야 하는지** 모르겠음 ('24. 4월, 국민신문고)
- 난임시술은 원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할 수 없고, 병원에 가면 기본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, 난임지원을 받기까지 시기와 서류를 따져 환자들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킴 ('24. 4월, 국민신문고)
- 임신 성공시까지 난임지원사업에 다함 지원하게 되는데, 개인정보 동의 서명을 위해 부부 양쪽이 평일에 관공서를 방문하여야 하여 시간적 어려움이 있음 ('23. 11월, 국민신문고)

## □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소급적용 불가

## 현 황

- (지원절차)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고,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

## 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 】

- 지원대상자는 시·군·구 보건소에서 '지원결정통지서'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 지정시술 기관에 제출
  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. 단, 시술시작일이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

## 문제점

- 난임지원결정통지 후 받은 진료에만 급여 등이 적용되어, 통지 전 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으면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지 못함
  - 직장인 등이 사정이 있어 즉시 시술을 받아야 하거나, 이미 시술·약제를 받았을 때 자비로 부담했다는 민원 발생

## 【 민원사례 】

- 맞벌이 직장인은 난임지원 통지서보다 난임진료·치료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음. 당일에 직장사정으로 난임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지원받지 못함. 난임지원비 소급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('24. 2월, 국민신문고)
- 2월 6일 진료를 받고 회사 근무로 바빠서 2월 8일에 난임 지원을 신청 하였으나,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음.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난임시술 지원 목적에 맞는 것 같음 ('24. 2월, 국민신문고)
- 난임지원결정 신청일 이전의 난임치료 비용에 대해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. 난임치료 시작일, 병원 방문일은 병원에서 결정해주는 날짜로 제한되어 미리 신청할 수 없음. 11만원 상당의 난임주사약 지원을 받지 못함 ('24. 3월, 국민신문고)

## □ 비혼 출산에 대한 난임지원 부족

### 현 황

- '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
  - 20대 중 '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' 인식이 '14년 30.3% → '24년 42.8%로 확대됨 ( $\Delta 12.5\%$ )
  - 20대 중 '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'는 비율은 '14년 51.2% → '24년 39.7%로 감소함 ( $\nabla 11.5\%$ )
- ※ 한국 비혼 출생비율('24년): 4.7%,  
OECD주요국 비혼 출생 비율('20년): 미국 41.2%, 프랑스 62.2%, 호주 36.5% 등

### 문제점

- 난임 문제를 겪고 있으나 비혼(사실혼 제외) 출산을 원하는 여성 등에 대한 관심 부족
  - 난임시술 지원제도는 사실혼도 지원하나, 장래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 커플 등은 동의서, 보증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워 지원이 곤란
- ※ 사실혼 지원: 동의서, 사실혼 확인서 등 혼인이 예정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#### 【 민원사례 】

- 사실혼일 때 배우자·본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보증인의 확인서,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방문접수하는 것이 번거로웠음 ('24. 10월 국민생각함)

-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에도, 난임시술 지원 제도의 대상은 법률혼 부부이거나 사실혼 서류를 제출한 커플에 한정
- ※ (해외사례) ▲ 프랑스 시민연대계약(PACS)를 맺은 커플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지원, ▲ 덴마크: '07년부터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난임치료 지원

#### 【 언론보도 】 '비혼 출산' 불법 아니지만...정자 제공·시술비 지원 안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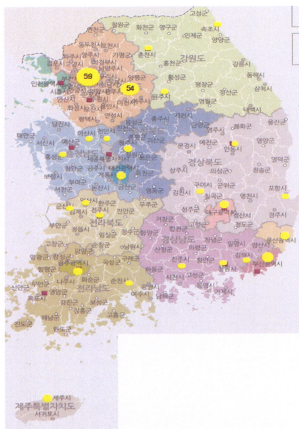
- 난임시술 지원대상에 비혼모 관련 내용이 없어 비용 지원이 어려움 ('20. 11월)
-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과 비용 지원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('23. 6월)

# □ 배우자의 난임시술 동행을 위한 휴가 부족

## 현 황

-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,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난임시술을 위해 타 시·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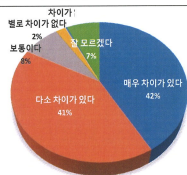
| 지자체   | 난임병원 | 인공+체외 | 인구수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| 59   | 36    | 9,366,283명  |
| 경기도   | 54   | 34    | 13,661,438명 |
| 강원도   | 7    | 5     | 1,522,542명  |
| 충청남도  | 12   | 6     | 2,134,817명  |
| 충청북도  | 8    | 2     | 1,591,485명  |
| 경상남도  | 18   | 6     | 3,236,224명  |
| 경상북도  | 10   | 5     | 2,544,174명  |
| 전라남도  | 5    | 2     | 1,794,967명  |
| 전라북도  | 11   | 7     | 1,745,885명  |
| 제주도   | 4    | 1     | 672,252명    |
| 부산광역시 | 27   | 15    | 3,280,749명  |
| 인천광역시 | 15   | 7     | 3,011,073명  |
| 대구광역시 | 10   | 10    | 2,367,183명  |
| 광주광역시 | 10   | 5     | 1,413,606명  |
| 대전광역시 | 11   | 7     | 1,440,558명  |
| 울산광역시 | 5    | 3     | 1,100,304명  |
| 세종시   | 3    | 2     | 387,940명    |
| 합계    | 269  | 153   |             |



<그림> 지역별 난임병원 현황 (체외수정 가능 병원)

## <(참고) '24. 10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>

- (의료기관 접근성)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31%에 달함



-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난임치료시술휴가(특별휴가) 사용 가능

※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의한 난임치료시술휴가(특별휴가) 일수

| 구분   |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여성원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2일</li> <li>■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: 총 3일</li> <li>■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: 총 4일</li> </ul> |
| 남성원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자채취일 1일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'24년 1월~9월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(166개 지자체)에 따르면, 휴가 사용인원 및 사용일수 모두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음

< 난임치료휴가 사용 현황('24.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) >

| 여성 공무원 |        | 남성 공무원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용인원   | 평균사용일수 | 사용인원   | 평균사용일수 |
| 4.52명  | 3.04일  | 2.22명  | 1.24일  |

## 문제점

-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있어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, 시술 특성상 난자·정자채취일, 이식일 등에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, 관련 휴가 제도 미비

### 【 민원사례 】

-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같이 동행해서 다녀와야하는데, 남편도 난임휴가를 사용가능한지 ('20. 11월, 국민신문고)
- 아내의 난임시술에 동행하여 의사와 상담하고, 배아 이식을 결정해야 하는 날에는 남성도 동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('19. 6월, 국민신문고)

- 일부 지자체\*가 자체 조례로써 '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제'를 도입한 사례를 확산할 필요

\* 경기도, 광주광역시, 인천광역시(의회, 교육청 포함)등은 복무조례에 동행휴가를 규정, 여성공무원 시술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치료시 동행휴가 부여

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】

제20조(특별휴가)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**배우자 동행휴가**를 줄 수 있다.

【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】

제18조(특별휴가)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**배우자 동행 휴가**를 줄 수 있다.

【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】

제23조(특별휴가) 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**배우자 동행휴가**를 줄 수 있다.

※ **경기도**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현황: '24년 상반기 동행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0명이며, 1인당 평균 사용일은 1.9일

| 구분    | 난임치료시술휴가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동행휴가(남성)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| 여성       |            | 남성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| 사용<br>인원 | 1인당<br>사용일 | 사용<br>인원 | 1인당<br>사용일 | 사용<br>인원 | 1인당<br>사용일 | 사용<br>인원 | 1인당<br>사용일 |
| 2024년 | 26       | 2.1        | 11       | 3.0        | 15       | 1.5        | 10       | 1.9        |
| 2023년 | 33       | 3.6        | 21       | 3.6        | 12       | 3.6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|

※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도입된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복무규정에 명시하여 전국 공통 적용, 동행휴가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('24. 10월, 권익위 실태조사)

## IV. 개선방안

### 1

### 임신·출산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

#### □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가임력검사를 포함 정책제안

- 가임력검사를 쉽게 받도록 하고, 대상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검사를 포함

⇒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, 「건강검진 실시기준(고시)」 개정 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한 건강검진항목 확대 등

#### 【 (참고)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】

제2조(국가건강검진의 범위)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3호차목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.
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강검진

#### □ 법률혼 부부의 난자·정자 동결에 대한 배우자 동의 조건 폐지

- 법률혼 부부의 난자·정자 동결에 대한 배우자 동의 절차의 예외 마련

- 기혼자가 배우가 아닌 난자·정자만을 동결하는 경우,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

⇒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개정

## 2

## 난임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의 부담 해소

## □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증명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제출 폐지

-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, 모자보건사업 지침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자격요건에서 '건강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'를 삭제

## □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

- 매 시술마다 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연장(예: 1년)하고,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 횟수 제한(1회)을 폐지하는 등 부담 완화

⇒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개정

## 3

## 난임시술 지원금 대상자 편의성 제고

## □ 난임지원결정통지 전 일정 기간 내 시술 시작 시 소급 지원

- 사전에 난임지원결정통지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, 일정 기간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난임시술비 지원금 지급

□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법률혼, 사실혼 등 혼인(의사) 서류 제출 없이 임신·출산을 원하는 국민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정책제안

## □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 정책제안

○ 난임시술에 동행하는 배우자도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 사용 허용

⇒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등에 반영

< 개선방안 예시(국가공무원복무규정) >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선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0조(특별휴가)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| 제20조(특별휴가)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<b>및 그 배우자</b>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|

< 개선방안 예시(지방공무원복무규정) >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선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의7(특별휴가)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| 제7조의7(특별휴가)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<b>및 그 배우자</b>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|
| 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V. 조치사항

### □ 대상기관 : 보건복지부, 인사혁신처, 행정안전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기관           | 조치기한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㉠ 임신·출산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    | ※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검사를 포함 (정책제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-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법률혼 부부의 난자·정자 동결에 필요한 배우자 동의 조건 폐지<br>⇒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개정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'26.<br>12월 |
| ㉡ 난임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의 부담 해소 | ○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증명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제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'25.<br>6월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, 시술 횟수 제한 폐지<br>⇒ 보건복지부 모자사업안내 지침 개정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'25.<br>6월  |
| ㉢ 난임시술 지원금 대상자 편의성 제고    | ○ 난임지원결정통지 전 일정 기간 내 시술 시작 시, 지원금 소급지원<br>⇒ 보건복지부 모자사업안내 지침 개정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'25.<br>6월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법률혼·사실혼 등 혼인(의사) 서류 제출 없이, 임신·출산을 원하는 국민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(정책제안)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| -           |
| ㉣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확대        | ※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 (정책제안)<br>- 난임시술에 동행하는 배우자도 난임치료동행휴가 (특별휴가) 사용 허용 (정책제안) | 인사혁신처<br>행정안전부 | -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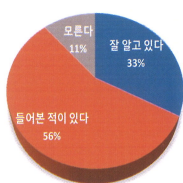
## [붙임1]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

### □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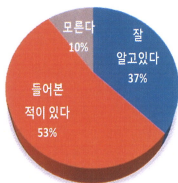
- (조사기간) '24. 10. 17.(목) ~ 10. 28.(월) (12일간)
- (참여자) 총 2,335명

### □ 설문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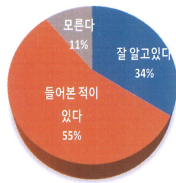
#### ①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?



<전체 표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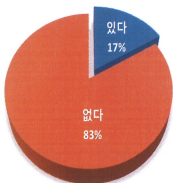


<20~40대 여성 753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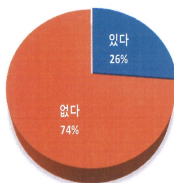


<20~40대 남성 1,568명>

#### ② 난임 시술비 지원, 심리상담, 가임력검사(산전검사) 등의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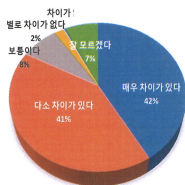
<전체 표본>



<20~40대 여성 753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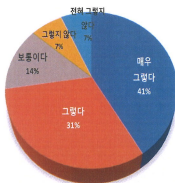
③ 수도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지역적 차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83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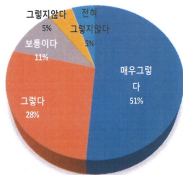


④ 가임력검사(산전검사)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?

- 가임력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,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시킨다면 난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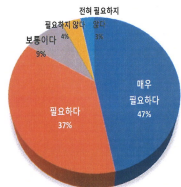
<전체 표본>



<10~40대 남녀 955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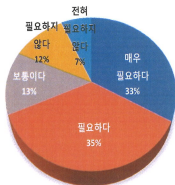
⑤ 매 회차마다 서류 제출 및 보건소 결정통지 과정을 거쳐야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데,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까?

- 난임시술비 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4%로, 절차의 개선이 필요



⑥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

-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본인의 난자·정자를 동결할 수 없는 현 제도의 개선이 ‘필요하다’ 약 68%, ‘필요하지 않다’ 약 1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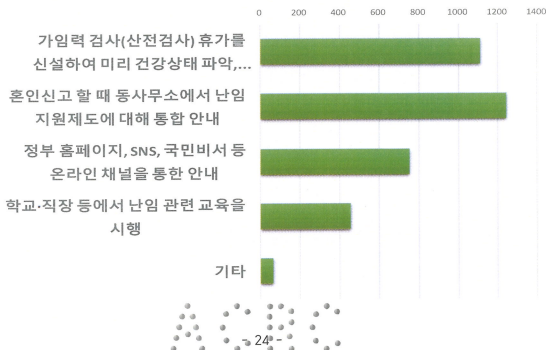


↳ ⑥ 6번 설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?

| 순위 | 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응답자  | 비율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1  | 난자·정자 동결은 개인 결정권의 영역임             | 631명 | 40% |
| 2  | 자녀 유무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대립으로 동의 받기 어려움 | 376명 | 24% |
| 3  | 미혼, 사실혼인 자는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이들과의 차별 소지 | 292명 | 19% |
| 4  | 투병, 연락 두절 등 배우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 발생    | 245명 | 16% |

⑦ 난임지원제도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

-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시 난임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함



## [붙임2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식 (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)

### 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[서식 제1호]

###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<br>(난임 부부 중 여성) | 성명   |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E-mail            |

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배우자 | 성명   |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|
|   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전화번호 | E-mail           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시술 종류 및 차수 | 시술 종류                      | 시술 회차 |
|            | [ ] 신선배아 [ ] 동결배아 [ ] 인공수정 |       |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적사항 확인 |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| [ ]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[ ]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[ ] 의료급여 수급자 |  |
|         | [ ] 미가입(사실혼 대상자의 건강보험적용에 한함)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|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| [ ]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[ ]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[ ] 의료급여 수급자 |  |
|         | [ ] 미가입(사실혼 대상자의 건강보험적용에 한함)               |  |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군·구 보건소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진단서 1부(최초 신청시에만 제출)<br>2.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(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)<br>3.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<br>4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(사실혼의 경우)<br>5.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<br>6.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(사실혼의 경우)<br>7.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사실혼의 경우)<br>*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확인보증서를 제출<br>8.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,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<br>*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# ※ 유의사항

- 1)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.
- 2) 정부지원 시술결과(출생아 포함)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.
- 3) 첨부서류 2~4의 경우,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4)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##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

두 당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안내받았으며 이견이 없음을 동의합니다.

1. 두 당사자는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니지만, 1년 이상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 신청일 현재 동거 등 상호 합의 하에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2. 두 당사자가 만약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님에도 보조생식술(인공수정 및 체외수정)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보조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한 경우, 관련비용의 환수는 물론 형법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.
3.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을 신청하여 결정통지된 '사실상 혼인관계'는 보조생식술(인공수정 및 체외수정)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, 그 외에 다른 법적 효력을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20 . . . .

당사자1 : (인) 연락처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당사자2 : (인) 연락처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000보건소장 귀하



정 본 입 니 다 .

2024. 12. 24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

A O B C